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대통령령 제23808호, 2012.05.23]
-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준용)
- ③ 서울시 정보화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개선(정보화기획담당관-4194, 2009.3.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자를 말한다.
- ②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협상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 ③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공사의 경우 구축사업서를 포함한다)와 가격제안서로 구분 할 수 있다.
- ④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⑤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서울디자인재단)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제안서 평가)

-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80/100과 입찰가격 평가 20/100으로 한다.
-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10점)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별표]의 수행경험(실적/금액),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70점)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⑤ 입찰가격 평가(2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규정에 의거 [붙임 6]과 같다.

제4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②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6조 (협상절차)

-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7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가격의 협상)

-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제11조 (계약체결 및 이행)

-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입찰 가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정량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경험 	· 사업수행실적금액(누적) 및 건수	3	10 사업부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인력 	· 경력 및 기술상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태 	· 신용상태 평가등급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인도 	· 입찰참가제한기간	1		
정성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 	포트폴리오평가 · 관련 프로젝트 수행 실적과 성과 · 공간연출, 운송 및 작품설치 등 단위사업 수행능력	10	70 심사위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수행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구성 적절성	· 수행사업의 취지 및 목적 ·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구성 완성도		10
		기획 내용의 실행 가능성	· 실행을 위한 다양한 요소 고려 여부 (추진일정 타당성, 현실성 등)		10
		기획의 독창성 및 전략	· 프로그램간 연계성, 조화 · 효율성 · 실행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 제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구체화 전략		15
		□내용 사업운영전문성	· 사업전담 추진을 위한 전문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관리계획 등의 구체성 · 행사 수행, 안전 등 행사 운영방안의 적절성 · 해외 바이어 초청 및 관리 능력 · 글로벌 행사 수행 경험 및 전문성 · 사업 추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천 전략 · 위기 발생시 대처 능력, 행사 운영의 전문성		25
합 계			100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

※세부평가내용 등은 제안서 심의위원회 평가위원의 논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입찰가격 평점 산식

○ **입찰자 모두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20 \times \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 \left[2 \times \left(\frac{\text{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text{당해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right]$$

여기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경우의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0 X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제안서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점수	배점
사업수행(실적) 참여인력	- 유사 사업수행의 누적 실적금액 및 건수 ※ 준공 또는 납품 금액 기준	3	10
참여인력	- 경력 및 기술상태	3	
경영상태	- 신용상태 평가등급	3	
신인도	- 입찰참가제한기간	1	
합 계			10

※ 경영상태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배점 기준(정량적 지표 모두 해당)

- 공동이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
- 분담이행인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산정

○ 수행경험(실적) : 유사 사업수행의 누적 실적금액(3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5억 이상	3억 이상	1억 이상	1억 미만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누계실적금액	1.5	1.0	0.5	0	1.5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건수	1.5	1.0	0.5	0	

■ 누계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유사사업 누계실적 금액 총합

■ 누계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유사사업 누계실적 건수 총합

■ 실적인정범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내외 패션 전시 또는 패션 홍보·마케팅 관련 사업 실행실적

※ 실적인정 : 발주처에서 인정한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사업실적 증명서 제출 시, 국내외 패션 전시 또는 홍보·마케팅 상세실적 기재 필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실적증명서(별첨서식사용) 또는 국가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증명서 또는 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 제출시 평가에 반영

○ 참여(기술)인력 : 경력 및 기술 상태(3점)

평가요소				배점	비고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0.4	0.3	0.2	0.1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참조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3점)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과학기술부 공고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공인기관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첨부(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 전문기술 증명은 공고일 이전 등록된 기술만 인정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12년 12월 기준)>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특 급 기술자	기 술 사	· 박사학위자로서 3년 이상 · 석사학위자로서 9년 이상 · 학사학위자로서 12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5년 이상
	· 기사자격 : 10년 이상 · 산업기사 : 13년 이상	
고 급 기술자	· 기사자격 : 7년 이상 ~ 10년 미만 · 산업기사 : 10년 이상 ~ 13년 미만	· 박사학위자 · 석사학위자로서 6년이상 9년미만 · 학사학위자로서 9년이상 12년미만 · 전문대학 졸 : 12년이상 15년미만 · 고등학교 졸 : 15년이상
중 급 기술자	· 기사자격 : 4년 이상 ~ 7년 미만 · 산업기사 : 7년 이상 ~ 10년 미만	· 석사학위자로서 3년이상 6년미만 · 학사학위자로서 6년이상 9년미만 · 전문대학 졸 : 9년이상 12년미만 · 고등학교 졸 : 12년이상 15년미만
초 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석사 학위자 · 학사 학위자 · 전문대학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3년 이상

○ 경영상태 : 신용상태 평가등급(3점)

평가요소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	AAA	3.0	3.0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2.0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1.0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신인도 : 기술인증, 계약이행, 성실성 등(1점)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단, 1개월 미만일 경우 1월로 계산)
-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않았을 경우 1점

○ 가산점 부여표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8	1.8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0.9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1.8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 여성기업		1	1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1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6	-5 (각 -1)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0.5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0.5		

□ 가산점 평가방법

-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 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 | | | |
|-------------|----|----|----|
| 구 분 | 5월 | 6월 | 7월 |
| 월별 신규고용인원 | 5 | 4 | 5 |
|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 5 | 9 | 14 |
-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 9.333333 = 10\text{명}$
-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

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제안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등급제

- 정성적 평가점수(70점)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 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80	60	40	20	0

※ 단,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등급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판단에 따라 변경, 운영될 수 도 있음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중 제안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참조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붙임 2]와 같이 정함

제안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 배점표

등급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성적 평가	역량	포트폴리오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프로젝트 수행 실적과 성과 · 공간연출, 운송 및 작품설치 등 단위사업 수행능력 	10	70
	추진내용	수행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구성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사업의 취지 및 목적 ·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구성 완성도 	10	
		기획 내용의 실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을 위한 다양한 요소 고려 여부 (추진일정 타당성, 현실성 등) 	10	
		기획의 독창성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간 연계성, 조화 · 효율성 · 실행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 제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구체화 전략 	15	
		사업운영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전담 추진을 위한 전문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관리계획 등의 구체성 · 행사 수행, 안전 등 행사 운영방안의 적절성 · 해외 바이어 초청 및 관리 능력 · 글로벌 행사 수행 경험 및 전문성 · 사업 추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천 전략 · 위기 발생시 대처 능력, 행사 운영의 전문성 	25	
합 계				70	